#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의안 번호 | 19 - 21 |
|---|---|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안 제4조)

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안 제5조 ~ 제8조)

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이용료 (안 제9조 ~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1. 3. ~ 1. 23. (제출된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2.19.)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6)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등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

을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 발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기관 자원발굴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탐색 및 상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포구-서울시교육청 간 협약 체결(2017. 3. 1.)에 의거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청비 40%, 구비60%)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 비용추계기간 : 2019. 1. ~ 2023.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19년) | 2차년도 (2020년) | 3차년도 (2021년) | 4차년도 (2022년) | 5차년도 (2023년 이후 계속)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시비 보조금 | 122,500 | 122,500 | 125,000 | 127,500 | 130,000 | 627,500 |
| | 구비 보조금 | 200,000 | 202,500 | 205,000 | 207,500 | 210,000 | 1,025,000 |
| | 소계(b) | 322,500 | 325,000 | 330,000 | 335,000 | 340,000 | 1,652,500 |
| □ 총 비용(a-b) | | 322,500 | 325,000 | 330,000 | 335,000 | 340,000 | 1,652,500 |

※ 인건비 상승분(연도별 소요예산의 1.5%)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구와 서울시 교육청 협약에 의해 구비 및 서울시 교육청비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작성자 이름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이기연 |
|---|---|
| 연 락 처 | 02-3153-8952 |